

(사)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 정관

2006. 주무관청 신고
2007.01.29. 법인설립허가
2017.02.13. 1차 개정
2018.01.29. 2차 개정
2020.02.10. 3차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 <2018.01.29. 개정>

제2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 둔다.

제3조(목적)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·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·미술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내의 박물관·미술관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건전한 박물관·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
2. 충청북도내의 박물관·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
3. 학술대회,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
4. 충청북도내의 박물관·미술관의 특별전 지원 사업
5. 박물관·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
6.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교류사업
7. 박물관 협력망 사업 <2017.02.13. 개정>
8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<2017.02.13. 개정>

제5조(수익사업)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2017.02.13. 개정>

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- 제6조(이익의 제공)**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회 원

- 제7조(회원의 자격)**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.
1. 정회원: 비영리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
 2. 명예회원: 충청북도 박물관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<2017.02.13. 개정>
 3. 특별회원: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② 본회 회원의 가입요건, 절차 등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- 제8조(회원의 권리)**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특별회원·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.

- 제9조(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 2.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 <2017.02.13. 개정>
 3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<2017.02.13. 개정>
 4. 입회비,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<2017.02.13. 개정>

- 제10조(회원의 자격상실)**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이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할 때
 2. 회원기관이 해산되었을 때
 3. 제명되었을 때
- 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 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.

- 제11조(회원의 상벌)**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

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, 견책,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- ③ 제9조 제4호를 해태할 경우 제 8조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회원으로서 존속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탈퇴한 것으로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 3 장 임 원
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 <2017.02.13. 개정>
3. 이사 5인 이상(회장, 부회장, 본회 학예연구회 회장 포함) <2017.02.13. 개정>
4. 감사 2인
5. 고문 약간 명

제13조(임원의 선임)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과 이사·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하고,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선출한다. <2020.02.10. 개정>

제14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15조(임원의 선임 제한)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 <2017.02.13. 개정>
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에 규정된 친족관계 가없어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16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1회 연임만 가능하다. <2017.02.13. 개정>

- ② 임원이 소속 박물관·미술관으로부터 관장 또는 학예연구사 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.
-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- 제17조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
의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 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 및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⑤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
제18조(회장의 직무대행)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되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 단,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이사회가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여 그 직을 승계한다. <2017.02.13. 개정, 추가>

제 4 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 한다.

- 제20조(구분 및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 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·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- 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7조 제④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공동관장으로 등록된 관은 공동관장 간 위임할 수 있다. <2017.02.13. 개정, 추가>
- ④ 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된 회원관은 관련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⑤ 정관변경은 제 43조(정관변경)에 의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22조(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공동관장으로 등록된 관은 공동관장 간 위임할 수 있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④ 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문화재단이사장 또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된 회원관은 관련 최고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2017.02.13. 개정>
- ⑤ 정관변경은 제 43조(정관변경)에 의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2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4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본회의 재산 처분 및 취득 등 중요 사항
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위해 감사와 고문을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26조(구분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전·후반기 1회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

제27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에 의해 각각 소집하여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·무선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
-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8조(서면결의)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9조(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30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<2017.02.13. 개정>
3. 본점 및 지점의 설치에 관한 사항 <2017.02.13. 개정>
4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재산관리(자산취득처분)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
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9.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0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1조(이사회결의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
제 6 장 재 산 과 회 계

제32조(재산의 구분)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3조(기본재산의 처분)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34조(수입금)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.

1. 입회비 및 회비
2. 후원금 및 출연금
3. 기타 수입금

제35조(차입금)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7조(예산편성)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38조(결산)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0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(회의비, 출장비, 감사수당 등)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 무 부 서

제41조(사무국)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선임관에 사무

국을 둔다. <2017.02.13. 개정>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<2017.02.13. 개정>

제 8 장 보 칙

제42조(해산)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43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44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2017.02.13. 개정>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며, 현재 정관 시행 시 임원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(3년). <2017.02.13. 개정>